

#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99,370,828	26,981,125
일반회계	817,286,464	24,518,594
특별회계	82,084,364	2,462,531
기타특별회계	82,084,364	2,462,531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61,533	31,846
주차장특별회계	498,302	14,94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739,162	82,17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9,375,783	881,27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65,634	7,969
치수사업특별회계	501,741	15,05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00,000	15,00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9,754,209	892,626
도시개발특별회계	17,300,000	519,000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88,000	2,64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588,024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4,400,393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8,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을 상호 이용할수 있다.

제 8 조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종에 교부되는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